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0. 4.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4. 8. 27. 시행)됨에 따라,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 운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를 이행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에 관한 사항

- (기존)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 (개정)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3항제1호의 별표 1)

-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은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 3만원 → 5만원

가.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4. ~ 10. 9.(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를 “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를 “의원이 준수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원”을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완하여야”를 “보완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술선수범하여야”를 “술선수범해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하~~여야~~”를 “자문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장하~~여야~~”를 “보장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 하는”을 “해~~야~~ 하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하~~여야~~”를 “의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관리하~~여야~~”를 “작성·관리해~~야~~”로,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상품권 제외),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가. 의원 :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또한,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담양군의회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담양군의회 <u>의원</u>에게 적용한다. ② (생략)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금지되지 아니한 담양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해	<u>담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u> 제1조(목적) ----- ----- ----- ----- <u>의원이 준수해야</u> ----- -----.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 <u>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 ----- ----- ----- ----- -----

당 위원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해야 -----.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신고해야 -----.

⑤ -----

----- 해야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생략)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③ -----

----- 공개해야 -----.

-----.

제1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신고해야 -----.

-----.

③ -----

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
여야 한다.

⑤ (생략)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
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
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
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
법 등) ① 제13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보완해야 ----.

④ -----

----- 신고해
야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반환해야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
법 등) ① -----

----- 해야 ----
--.

② -----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
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③ (생략)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
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략)

----- 반환해야 -----
----- 통지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영리행위의 신고) -----

신고해야 ----.

제15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신
고해야 ----.

제1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

----- 솔선수범해야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조례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② -----

----- 제시해야 ----.

③ -----

----- 자문해야 -----.

④ -----

----- 보장해야 -----
----- 해야 한다.

⑤ -----

----- 해야 -----.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
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
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
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
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
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
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
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 신고해야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 해야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해야 하는 ---

----- 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

----- 관리해야 -----

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 4. (생략)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

1. ~ 4. (현행과 같음)

⑥ -----

----- 통
보해야 -----.

-----.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 위촉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생략)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략)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 의해야

----- 해야

제2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 위촉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현행과 같음)

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생략)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회피해야 ----.

제25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지해야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작성·관리해야 -----

----- 포함해야 ----.

제27조(의결사항의 통지) -----

--- 통보해야 -----.